

이전지역(강원)인재

가. 이전지역(강원)학교

- ①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강원도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 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-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강원도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- ㉠ 『경찰대학 설치법』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『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『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『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③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상의 "분교"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
예시
○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
- ④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나. 이전지역(강원)인재

강원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- ① 다음의 강원도지역 대학 졸업(예정)자
 - ㉠ 『고등교육법』상의 강원도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 - 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② 이전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강원도 지역 학교일 경우
 - ㉢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- ㉣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- ㉤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
㉔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
㉕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㉖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㉗ 강원도 지역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